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고

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한 「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7일

목포해양대학교총장

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

I.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- 해당없음

-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미실시
- 정원외 모집에 해당하는 "재외국민전형"과 "외국인전형"에 한하여 인성면접 실시

Ⅱ.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

- (1)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
 - 2023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모집요강 및 면접고사 평가 자료
 - 2023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모집요강 및 면접고사 평가 자료
- (2)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
 -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제25조의2(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)
- (3)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
 - 「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규정」 붙임

(4)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



Ⅲ.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(정성평가 부분)

- (1) 평가방법: 2023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생 모집요강과 면접고사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
 - 평가대상: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시 면접고사를 실시한 학부
 ※ 재외국민 전형(전교육이수과정 포함) 면접고사 실시 현황

모집단위		재외국민		전 교육과정 이수자	
		선발인원	지원자	선발인원	지원자
합계		13	11	제한없음	1
해 사 대 학	항해학부	13	6	· 제한없음	-
	해상운송학부		-		1
	항해정보시스템학부		-		-
	기관시스템공학부		-		-
	해양경찰학부		5		-
	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		-		1
픎 양 광 과 대 하	컴퓨터공학과		-		-
	조선해양공학과		-		-
	환경·생명공학과		-		-
	해양건설공학과		-		-

- 면접고사 형태 평가: 교과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 또는 학생부, 자기 소개서 등의 확인 면접인지 또는 예시문 등 교과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과 관련한 평가
- (2) 면접고사 실시 전형
 -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: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않고 외국의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
- (3) 면접형태
 - 다대일: 3명의 면접평가위원이 1명의 수험생 평가
- (4) 고교교과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여부 평가
 -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, 자기소개, 전공적합성 등 확인 면접

Ⅳ. 문항 분석 결과 요약

• 면접문항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여부 확인: 인·적성 관련 사항이므로 고교교과 교육과정과 연관성 없음

V.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

• 수시 및 정시 신입생 모집에서 면접전형이나 종합전형 도입 시 「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」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

Ⅵ. 부록

• 「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규정」 전문

[부록]

목포해양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항평가위원회 규정

[시행 2018.5.25.] [목포해양대학교 규정 제683호, 2018.5.25., 타규정개정]

제정 2015. 11. 19.(제580호) 타규정개정 2018.05.25.(제683호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하여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대학 입학전형에서 실시되는 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 - ② 고사란 논술 등 필답고사, 면접·구술고사, 신체검사, 실기·실험고사 및 적성·인성 검사를 말한다.
- 제3조(기능)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선행학습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
 - 2.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대입전형 반영 계획
 - 3.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된다.<개정 2018.5.25.>
 - ③ 위원은 교무처장과 현직 고교 교사,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, 학부모 중 총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.
 -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입학학생처 직원이 된다.
- 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 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8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수당)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우리대학 보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평가)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매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실시하여야한다.
 - ② 총장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칙 (제580호, 2015. 11. 1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제683호. 2018. 5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